

# 보도참고자료



**기획재정부**  
MINISTRY OF STRATEGY  
AND FINANCE

보도일시	2010. 11. 18(목) 배포시		
배포일시	2010. 11. 18(목) 14:00	담당부서	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
담당과장	이 준 균 (2150-5530)	담당자	문 상 호 사무관(2150-5533)

## 제목: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개선

기획재정부는 공기업·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(이하 '공공기관 예타'라 한다) 제도를 개선하여 2011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

\*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기관의 자체 예산으로 시행

금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

○ 공공기관 예타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면제대상도 명확화

-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공기업의 해외투자사업도 예타 대상에 포함
- 면제대상을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사업, 재해예방·복구지원, 시설 안전성 확보 등 긴급요구 사업으로 명확화
- 다만, 기관의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 주무부처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

○ 대규모(총사업비 500억원이상)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외부전문기관\*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

\* 현재는 외부전문기관을 공공기관이 임의로 선정

□ 2011년부터 공공기관 예타를 시행하기 위하여

- 공공기관 예타를 담당할 외부전문기관은 국책연구기관\* 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년말까지 지정할 계획

\*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등

- 또한,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사업유형별(해외투자사업, SOC, 자본투자 등) 분석기법\* 등 세부시행계획을 연내 마련하고, 2011년 1월 중 각 공공기관에 통보할 계획

\* 경제성(편익/비용분석) 분석 및 재무성(투자수익률 및 투자자금 회수기간 등) 분석

□ 내년부터 공공기관 예타 제도가 개선·시행되면,

- 그 간 예타 면제대상이 불명확하고 예타를 담당하는 외부전문기관을 공공기관이 임의로 지정하는 등의 형식적인 운영 방지
-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자체 대규모 사업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

## 기획재정부 대변인

구 분	현 행	개 정
원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규 투자사업·자본출자 예산은 관계법령상 기관의 고유목적사업으로 한정한다. <u>다만,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규 투자사업·자본출자 예산은 관계법령상 기관의 고유목적사업으로 한정한다.</li> </ul>
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규 투자사업, 자본출자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반영하되,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경우는 외부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을 반영한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규 투자사업, 자본출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반영하되,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경우는 <u>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한다.</u></li> </ul>
면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다만, 국가정책사업(또는 국고 지원사업),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사업지연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다음 각호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.</u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중 국가재정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</u></li> <li>2. <u>재해예방·복구지원, 시설 안전성 확보 등 긴급을 요구하는 사업</u></li> <li>3. <u>기관의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무부처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사업</u></li> </ol> </li> </ul>
시행 시기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2011년도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을 반영하고,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변경한다.</u></li> </ul>